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684
----------	------

제안년월일: 2025년 4월 2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586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2641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민간사업 대상 사업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요건 규정 일부 삭제로 협의 절차 단축(안 제27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7조의 제목“(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을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를 “평가서”로, “협의 절차”를 “협의절차”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생 략) <u>&lt;신 설&gt;</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 략)</p> <p>제27조(협 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p> <p>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u>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p>	<p>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p> <p>2.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u></p> <p>3. <u>「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u></p> <p>③ <u>제1항과 제2항</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7조(협 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p> <p>① ----- <u>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u> ----- ----- -----.</p>

을 수 있다.

1. 협의를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협의를 절차의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평가서 -----

-----

협의를 절차-----

-----.

③ (현행과 같음)